

**Cour
Pénale
Internationale**



**International
Criminal
Court**

원본: 불어

No.: ICC-02/05-01/07

Date: 2007 년 6 월 4 일

제 I 예심원

담당: 판사 아쿠아 퀴니히아, 부장판사
판사 끌로드 요르다
판사 실비아 스카이너

사무총장: 브루노 카탈라

수단 다르푸르 사태

**아흐마드 무하메드 하룬 ("아흐마드 하룬") 및 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 ("알리
쿠샤입") 체포 및 신병인도에 관한 건**

공개문건

알리 쿠샤입의 체포 및 신병인도에 대한 협조요청

검사실

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

파투 벤수다, 부장검사

앤드류 케일리, 수석검사

국제형사재판소 (“재판소”) 사무총장;

2005년 3월 31일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 1593에 의해 다르푸르 사태가 재판소의 검찰총장에게 맡겨졌으며;

2007년 4월 27일 제 1예심원 (“예심원”)의 아흐마드 무하메드 하룬 (“아흐마드 하룬”) 및 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 (“알리 쿠샤입”)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이 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, 증거와 과정에 대한 예규 제 176조에 따라 아흐마드 하룬과 알리 쿠샤입의 체포와 신병인도에 대한 협조문을 준비하고 발송하는 책무를 하달했으며;¹

법전 제 58조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아흐마드 하룬에 대한 체포영장이 예심원에 의한 발부되었고;²

법전 19, 20, 57, 59, 60, 67, 87, 89, 91 및 97조, 증거와 과정에 대한 규정 21, 117 – 119, 176, 184 및 187조, 그리고 재판소 규정 31, 76 및 111조에 의거하며;

재판소는 법전 제 89조 (1)항에 의거, 용의자가 발견된 어떤 영토에라도 그의 체포와 신병인도에 관한 요청을 보낼 수 있고;

2007년 4월 27일 자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근거하여 다음의 인물의 체포 및 신병인도를 요청한다:

- 이름: 알리 무하메드 알리 압달라만 (“알리 쿠샤입”) 기타 호명: 알리 코세입, 알리 쿠칩, 알리 모하메드, 알리 코셉, 코셉 및 알리 코³);
- 나이: 약 50세로 추정됨;

¹ ICC-02/05-01/07-1.

² ICC-02/05-01/07-2.

³ 영문철자는 영문원본 참조.

- 국적: 수단국적으로 추정됨;
- 직업: PDF (Popular Defence Forces) 의 일원이자 부족장. 다르푸르 와디 살리지역의 “아키드 알 오카다” (“대령들의 대령” - 일종의 총 사령관) 를 역임한 것으로 추정됨. 잔자위드 민병대의 사령관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됨.
- 위치: 현재 수단 정부가 2005 년 4 월 발부하고, 2006 년 11 월 28 일에 집행한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수단에 억류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됨
- 기소혐의: 2003 년 8 월부터 2004 년 3 월까지 법전 제 8 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와, 2003 년부터 2006 년 사이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법전 제 7 조에 해당하는 반인륜범죄 행위;

체포 및 신병인도시:

재판소 사무국으로의 최종인도시까지 알리 쿠샤입의 안전을 요청함;

법전 87 조(4)항에 의거, 이 요청에 관한 어떠한 관련정보라도 피해자, 잠정적 증인들 및 그들의 가족들의 안전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보호를 위해 주의깊게 다뤄질것을 요청함;

법전 제 59 조(3)항 및 89 조(2)항에 의거, 알리 쿠샤입의 국내법정으로의 어떠한 재판관련 신청들도 재판소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함;

법전 91 조(2)항 (c)에 의거, 체포영장과 첨부된 사진자료들을 제외한, 신병인도 과정에 필요한 조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, 증언 또는 정보들을 재판소로 통보해주실 것을 요청함;

법전 97 조에 의거, 이 협조요청의 이행이 방해받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재판소가 이를 통보받을 것을 요청함;

법전 제 89 조(4)항에 의거, 이 협조요청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재판소가 이를 통보받을 것을 요청함;

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 184 조에 의거, 재판소의 사무총장은 알리 쿠샤입의 신병인도가 가능해지는 즉시 이를 통보받을 것을 요청함;

신병인도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알리 쿠샤입을 재판소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함;

회원국은 법전 59 조의 과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림;

법전 87 조 및 91 조, *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* 187 조 및 *재판소 규정* 111 조에 의거 이 요청문과 더불어 다음의 문건들이 영어와 아랍어로 첨부됨:

- i) 2007년 4월 27일자로 발부된 알리 쿠샤입의 체포영장 사본 및 그의 사진 (Annex 1);
- ii) 알리 쿠샤입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, 로마법전 및 *과정과 증거에 관한 규정*내의 관련 조항들의 사본(Annex 2).

사무총장을 대신하여,
마크 두비송,
최고 행정 책임관

2007년 6월 4일

네덜란드 헤이그